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3. 3.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1. 2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11. 29.

다. 상정일자 :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5. 3. 3)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0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0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있는 책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함.(안 제2조)
- 0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 0 여성주간 행사(안 제5조)
 -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0 구청참여 확대(안 제6조)

-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0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안 제7조)

-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함.
-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남녀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원 하고 아울러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처리 창구 운영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근거를 정함.

0 단체의 지원(안 제14조)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0 여성위원회 설치(안 제18조)

- 여성정책 및 기타 여성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0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안 제27조)

-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0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령에 따라 마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0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마포구는 남녀평등의 촉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6조에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8조에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여성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서 동 기금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규정하였음.

- 0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 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장, 복지증진을 통한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와 여성의 능력개발 등이 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음.

이제는 여성정책이 더 이상 “요보호 여성” 만을 위한 시혜정책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기본 이념과 범위 및 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여성정책의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였음.

- 0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남녀 평등의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등을 주요정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마포구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여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는 안 제1조 중 ”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구민” 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구청장” 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 안 제27조에서 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 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전제로 한 기금의 설치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확보되고 탄력적·신속적인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정과 통제에 배제,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난립 현상 및 방만한 운영의 초래로 부실재정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바, 마포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계법령에 지자체의 기금설치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고 안 제28조에 의한 기금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과의 구분 모호 및 중복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동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0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2006년부터 기금을 모아 기금의 이자로 운영할 계획인가?
- 0 답변요지(김경숙 가정복지과장) : 기금목표액을 정하여 구금고에 연간 적립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목표액까지 재예치하여 적립완료시 사용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 3. 3 이매숙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별첨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5. 3. 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동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구민”으로 함.(안 제3조)
-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 “구민”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수정안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3조(구민의 협력)---<u>서울특별시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u> -----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u>구청장</u> ----- (신 설) 1. <u>주요정책</u> 가. ~ 사.(생략)	제3조(구민의 협력)---<u>구민</u>----- -----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u> <u>“구청장”이라 한다)</u> ----- 1. <u>여성정책의 기본방향</u> 2. <u>여성정책의 추진목표</u> 가. <u>남녀평등의 촉진</u> 나.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u> 다. <u>여성의 복지증진</u> 3. <u>주요정책</u> 가. ~ 사.(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있는 책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여성주간 행사(안 제5조)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라. 구정참여 확대(안 제6조)

(1)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함

마.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안 제7조)

(1)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함

(2)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3) 남녀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접수처리 창구 운영과 교육실시 등을 위한 근거를 정함

바. 단체의 지원(안 제14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사. 여성위원회 설치 (안 제18조)

여성정책 및 기타 여성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여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1)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아.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안 제27조)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근거법령

가. 헌법 제117조

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다. 여성발전기본법(1995.12.30 법률 제5136호)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조례제정 후 2005년 추경에 예산편성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04.10.25 ~2004.11.15)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4.11.2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역성발전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 성 정 책

제4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차별 개선 등) ① 구청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모성보호 강화) 구청장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3조(아동보육) ①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제3조 제2호의 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여 성 위 원 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 1인
2. 구의회 의원
3.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복지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관련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여 성 발 전 기 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마포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 증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4조에 의한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3.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
4.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5.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7.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마포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복지관련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 의원
2. 마포구여성위원회 위원
3. 여성관련 단체장
4.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관련과장이 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4조 (기금의 회계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여성복지관련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관련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5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